

[問] 本人은 화재보험에 附  
保된 特殊建物의 一部를 貸借  
使用하면 중 本人 從業員의 失火  
로 화재가 발생하여 同建物에  
相當한被害를 遼 바, 建物所  
有主는 多幸히 保險會社로부터  
保險金을 支給받고 피해 복구  
를 완료하여 本人은 安心하던  
자 其後 保險會社로부터 損害  
賠償請求 書翰을 接受하였읍  
니다.

同損害賠償請求 근거와 重過  
失에 의한 失火가 아니라도 損  
害賠償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  
부를 回信하여 주십시오.

(참고) : 貸貸契約書上 貸借  
人の 責任으로 归着할 事由로서  
財產價值를 減少시켰을 時는 其  
損害全部를 賠償함. 等의 내용  
이 約定되어 있음

(答) 1 이 制度는 損害保險  
契約에서의 利得禁止의 原則에  
서 나온 것으로서 保險事由로  
인한 被保險者の 財產上의 損  
害를 補償하여 준 경우에 保險  
金以外에 被保險者(建物所有  
主)가 다른 利益을 얻고 있을  
때에 (例; 保險金도 받고, 貸  
借人에게도 損害賠償을 받는  
경우) 그 利益의 归屬을 保險  
者에게 돌리는 이론바 保險者  
代位制度에 근거하는 것입니다.

우리나라 商法 第681條와 第  
682條는 「保險의 目的」과 「第三  
者」에 대한 保險者代位를 각  
각規定하고 있니옵다(火保普約

第24條 참조).

貴下의 경우는 「第三者」에  
對한 保險者代位에 의한 것입  
니다.  
保險者代位에 의하여 保險會  
社가 取得한 權利의 限度는 保險  
會社가 被保險者에 대하여  
支給한 金額의 限度까지가 됩니다.  
즉 保險價額의 80%를 保險에  
부쳤을 경우에는 保險會社가  
取得하는 權利는 80%  
만이 認定됩니다.

한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것입  
니다.

그러므로 貴下는 同建物의  
火災가 貴下가 責任질 수 없는  
事由에 因한 것이라는 立證을  
다하지 못하면 貴下로서는 반  
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賠償  
責任을 면할 수 없읍니다. 그  
러나 이 경우 貴下는 同一建物  
인 경우에도 貴下가 使用中인  
賃借部分에 對한 損害에 대하  
여야만 賠償責任이 있으며 其  
外他人이 使用中인 部分에 對  
한 연소피해는 失火責任에 關한  
法律의 適用을 받아 賠償責任이  
없읍니다. 끝으로 保險者代位  
는 民法上의 代位(民法 제399조)  
같은 性質로서 保險會社는 指名  
債權諒渡의 對抗要件(商法  
제450條)의 節次를 밟지 않고도 貴下에  
게 權利를 主張할 수 있읍니다.

## 相談코너

### 特殊保險

2) 失火責任에 關한 法律(法  
律第607號)에 의하면 失火로  
因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  
害를 加한 者는 重大한 過失이  
있을 때에 限하여 責任을 진다  
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重大한  
過失에 의한 失火가 아니면 損  
害賠償할 의무는 없읍니다.

그러나 貴下의 경우는 保險金  
을 支給한 保險者가 被保險者  
(建物所有主)의 權利를 代位받  
고 貸借人이 貸借建物의 화재  
로 重過의무 이행 불능으로 인

金勝濟

<業務部·次長>